

의안
번호

302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
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운 영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

운영위원회(구의회사무국)

의안번호	302호
제 출 자	정기혁의원 외 10명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한상규

1.제안이유

○ 본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」을 폐지 하고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출석하는 증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비용의 종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비용 지급의 예외 (안 제3조)
- 다. 비용의 지급기준 (안 제4조)
- 라. 비용 지급 일수의 계산 (안 제5조)
- 마. 비용 지급의 제한 기준 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1)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7조 2)
- 나. 협조부서 : 의회사무국
- 다. 예산조치 : 필요시 편성
- 라. 입법예고 : 2024. 5. 17. ~ 2024. 5. 22.

4. 검토 의견

- 1994년 개정된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 ‘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’ 조항이 신설되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증인의 여비 등 실비를 ‘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’ 지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.
- 본 조례 1991년에 의회규정으로 제정된 기존의 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에서증인등 비용지급에관한규정」을 폐지하고,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에서 증인,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(안 제4조), 지급 일수의 계산 (안 제5조), 비용 지급의 제한 기준 (안 제6조)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독려하고자 제정한 것으로
- 기타 상위법령을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‘원안’ 가결함이 타당다고 검토되나
- 다만 조례 제1조 (목적)의 (이하 “증인등” 이라한다)는 삭제하고, 제2조의 (비용) 1항의 증인등에 지급하는 내용 중 증인등에 는 삭제하고 증인, 감정인 및 참고인 (이하 “증인등” 이라한다)에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하다고 사료됨.

※관계법령

1) 지방자치법

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

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2)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47조(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)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·진술하는 증인·참고인이 방송·보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회의 의결로 방송·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서 증인·참고인으로서 증언·진술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사본을 내줄 수 있다.

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·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(實費)를 지급한다.